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308호 2021. 6. 17.(목)

선 람	기 관 의 장

조 례

- 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443호)
- 예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444호)
-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445호)
-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446호)
- 예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447호)

규 칙

- 예천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예천군 규칙 제1293호)
- 예천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예천군 규칙 제1294호)

회 람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6월 17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443호

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로 한다.

제7조를 제10조로 하고,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8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

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④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 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법령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 법령에 맞게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는 납세자의 소유 재산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제7조)

-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평가

나. 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방법에 관한 사항(제8조)

- 신청 :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예천군수에게 신청
- 통지 : 경상북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 선정 후 신청 결과 통지

다. 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에 관한 사항(제9조)

- 의무 :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 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 지속,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 정보 보호
- 우대 :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 또는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등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6월 17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444호

예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5조”를 “제2조”로 한다.

제3장제1절(제6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개인분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제3장제2절(제7조 및 제8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절 사업소분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중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5로 한다”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종업원수, 급여총액,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를 “영 제85조의4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법 제84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로, “사실 발생일”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지방세법」 일부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예천군 군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민세 과세체계 변경으로 관련 조문 변경(제6조, 제7조 및 제8조)

○ 제3장제1절의 제목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변경

－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하고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분으로 과세체계를 변경하여 부과하도록 함

○ 제3장제2절의 제목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변경

－ 사업소분의 세율은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나. 종업원분의 세율은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제9조)

다. 종업원분에 대한 납세의무자 신고관련 적용조문 변경(제10조)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6월 17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445호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따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되는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 및 제2항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5항”을 “영 제8조제6항”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영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를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을 “2022년”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을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감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을 “법 제78조의3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외의 본문”을 “법 제78조의3제1항 제2호”로 하며, 같은 제2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제3호가목 및 나목”을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나목”으로 한다.

제7조 중 “2020년”을 “2022년”으로 한다.

제8조 중 “감면율”을 “경감률”로 한다.

제9조 중 “2021년”을 “2022년”으로 한다.

제12조 중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을 “법 제177조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자동차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각장애인 자동차세 면제대상 공동명의자 범위 확대(제2조)

- 현행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 개정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영주자격을 가진 등록외국인인 장애인과 그 가족

나. 상위법 경감률 규정에 따른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삭제(제3조 삭제)

- 2021년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경감률 적용다. 문화재, 지역특산물 생산단지 및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기한 연장(제4조, 제5조 및 제7조)
- 현행 : 2020년 12월 31일
- 개정 : 2022년 12월 31일

라.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규정 정비(제6조)

-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인용 조문 변경

마.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기한 연장(제9조)

- 현행 : 2021년 12월 31일
- 개정 : 2022년 12월 31일

바. 감면 제외대상 부동산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제12조)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6월 17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446호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박물관 교육사업”을 “박물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한 국내·외 박물관 교육 및 행사
등의 참가 실비 지원(식비, 차량지원비, 타 시·군 아카데미 참여
교육비 등)

② 박물관의 홍보 및 교육을 위하여 박물관 유관기관 관계자 및 방문객
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종 간행물 및 기념품, 체험물품 등을 제작

하여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예천군 예천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교육과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예천박물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확립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가.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한 국내·외 박물관 교육 및 행사 등의 참가 실비 지원(제4조의2제1항제2호)
- 나. 홍보 및 교육을 위한 기념품 등의 제작 지원(제4조의2제2항)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6월 17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447호

예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시재생사업”을 “도시재생 및 새뜰마을사업”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군”라”를 ““군”이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5호”를 “제3조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중전의 제4호) 중 “주민이”를 “도시재생 및 새뜰마을사업에서”로, “제3호”를 “제6호”로 한다.

4. 협동조합, 마을카페, 주민 커뮤니티 공간 등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

5. 마을공방, 공동창고, 매점, 숙박, 세탁 등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

6. 학습·회의 공간, 공연·전시·휴게시설, 운동시설 등 주민의 문화

·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공익 목적의 기준)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은 주민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주민 역량강화 활동

2.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마을관리협동조합 등의 활동

3. 마을의 환경개선, 공동이용시설 등 주민지원을 위한 활동

4. 그 밖에 도시재생 및 새뜰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 목적에

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활동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2. 사업지역 내의 주민협의체 사무실 및 회의실

3. 마을관리협동조합

② 제1항 이외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경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경감 대상 이외의 자가 제22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을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절차 등) ① 제22조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계획서를 사용 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표자의 주소, 성명
3. 사용목적 및 사용기간
4. 사용요금 등 운영·유지관리 계획
5. 안전관리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22조의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사용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 동 이 용 시 설 사 용 계 획 서

☐ 물건의 표시

- 소재지
- 지목(구조)
- 면적(건물면적)

☐ 사용목적 :

☐ 사용기간 :

☐ 운영·유지관리 계획 :

☐ 안전관리계획 :

☐ 사용조건 : 귀 군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공동이용시설 사용계획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주 소

성 명

(인)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공동이용시설(감면) 사용허가서

☐ 물건의 표시 :

☐ 사용목적 :

☐ 사용기간 :

☐ 물건의 표시 :

☐ 사용료 감면율 :

☐ 대표자 주소 :

☐ 대표자 성명 :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물건의 공동이용시설(감면)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예천군수 (인)

◇개정이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공동이용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이용시설 개정(제3조)

- 공동이용시설 추가 : 주민공동체 활성화, 소득 및 일자리 창출, 주민 문화·여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나. 공익 목적의 기준 규정(제21조의2)

다.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대상, 감면 절차 개정(제22조 및 제22조의2)

- 감면 대상 :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마을관리협동조합 등

예천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6월 17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규칙 제1293호

예천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예천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예천군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예천군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른 예천군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관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

신청인 (청구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접수번호				
처분내용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연도	기분	세목	부과액

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니고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예천군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며, 예천군이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배우자의 소유 재산 포함)의 가액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예 천 군

예천군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

① 신청인용

○ 신청인 : ○○○ 귀하

1. 예천군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예천군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는 (재산·소득요건 미충족)의 사유로 예천군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예천군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예천군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의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예천군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예천군 선정 대리인

성 명		자 격	
사 무 실			
연 락 처	(전화)		(휴대폰)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054-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② 선정대리인용

○ 예천군 선정 대리인 : ○○○ 귀하

신청인 ○○○님이 '00.00.00. 제출한 「예천군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귀하를 예천군 선정 대리인으로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지정 접수건(지정사건)

신 청 인(청구인)		접수(사건)번호	
과세기간·세목· 청구세액		연 락 처	
주 소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054-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

관인생략

예천군 선정 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illegible]

* 결정내용 : 인용(직권취소에 따른 각하, 재조사 포함), 기각, 각하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예천군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서식을 추가하고자 이 규칙을 개정함

◇주요내용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통지 및 지정 사건의 기록·관리에 필요한 서류 규정(제14조 ~ 제16조)

예천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6월 17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규칙 제1294호

예천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예천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한다.

제5조 중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한다.

제3장제2절의 제목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7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법 제83조제4항”을 “법 제83조 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31 -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예천군)

접수 일자	사업소명	납 세 의 무 자			사업소 소재지	면적	세율	세액	납부일	결 재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법인 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담 당	과 장

364mm×257mm(일반용지 80g/㎡)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

(예천군)

과세 번호	사업소명	납 세 의 무 자			사업소 소재지	면 적	세율	산출 세액	가산세	계	결의일	결 재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담 당	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개정이유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조문 내용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 제3장제1절의 제목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변경
- 균등분 중 개인에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개인분”으로 변경(제5조)
- 제3장제2절의 제목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변경
- 사업자가 납부하는 주민세를 “사업소분”으로 통합(제6조 및 제7조)

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별지 서식 제목 정비(별지 제3호서식, 제4호서식 및 제6호서식)

-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변경